

## 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, 연수 ·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

1996.11.08. 제정  
2003.09.22. 1차 개정  
2009.06.25. 2차 개정  
2016.06.13. 3차 개정  
2024.01.24. 4차 개정

### 1. 목적

사회변천에 따라 교육분야에도 점차 국제화, 고학력화 추세가 되면서 교원들이 자기연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외 자비유학, 연수 · 연구를 위한 휴직 희망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교원 수급, 재정운영 및 학생교육에 지장을 줄 것을 대비하여 교원 국외 자비유학, 연수 ·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시행하고자 함

### 2. 선정기준

- 가. 교육경력 3년 이상이고 본도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
- 나. 해외유학 경험이 없는 자(단, 상위 학위 취득의 경우는 제외)
- 다. 최근 3년 이내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
- 라. 수료 후 반드시 귀국하여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을 본도의 교육기관에 근무할 자
- 마. 외국의 교육기관,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
- 바. 유학, 연수 · 연구과정은 교육학 또는 전공교과 · 지도교과와 관련이 있어야 함
- 사. 어학연수의 경우는 중등교원은 자기 전공 교과 또는 지도 교과와 관련 있고 연수하고자 하는 언어가 해당 연수국의 모국어이어야 하고, 초등교원은 영어교과와 관련이 있고 언어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이어야 함
- 아. 유학휴직 종료 후 이어서 상위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휴직은 불가(다만, 복직 후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근무 후 신청가능)

### 3. 대상자 결정

대상자는 선정기준과 유학 · 연수 ·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결정, 휴직을 허가한다.

### 4. 사후관리

- 가. 귀국 후 복직 신청시에는 학위취득 논문 또는 연수 · 연구기관의 수료증, 연구확인서와 함께 유학 · 연수 ·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귀국 후에는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을 본도의 교육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.

### 5. 구비서류

- 가. 국외 자비유학, 연수, 연구 신청서 1부.
- 나. 유학, 연수, 연구 계획서 1부.
- 다. 이력서 1부.
- 라. 초청장 또는 입학허가서 사본(공증포함) 1부.
- 마. 각서 1부.
- 바. 학교장 추천서 1부.
- 사. 휴직원 1부.